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2016. 6. 24)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6월 2일(화)
-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6월 5일(금)

4. 관계법규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

- 동 조례안은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센터와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 추진 및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 가. 구청장이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5조제2항제2호)
- 나.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부문 등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
- 다. 관광진흥센터 설치 및 업무 범위 규정 신설(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라. 관광진흥센터 및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위탁 규정 신설(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및 안 제22조)

[검토의견]

- 동(同) 조례안은 마포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찾아오는 마포구 관광객을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외국인관광객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사업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제한됨으로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출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함.
※ 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단서규정(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출에 대한 지원근거)이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 마포 관광 진흥 전담조직인 관광 진흥 센터 설립예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필요함.

○ 관광 진흥 및 종합관광안내소 민간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대상 선정 시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5조제2항제2호에서는 구청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나. 안 제6조에서는 마포구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부문 등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함.

- 지원대상 :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
- 지원내용

-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 3)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 4)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 지원방법 :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 신설

※ 관광(의료관광 포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7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 가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다. 안 제8조 ~ 안 제10조에서는 관광 진흥 설치 및 업무 범위와 규정을 신설함

- 1) 마포구 지역 관광 진흥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광 진흥 설치에 관한 근거 마련
- 2) 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합정동) 마포한강푸르지오 상가 1층에 설치하되,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음.
- 3)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업무 범위 규정
 -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통계조사, 분석, 연구,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관광브랜드상품 및 수익형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각종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구에서 설치한 각종 관광안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안 제11조 ~ 안 제17조, 안 제22조에서는 마포구 관광 진흥 및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위탁 기준을 구체화함.

- 1) 위탁대상 :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2) 위탁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 3) 수탁자 선정기준
 - 센터 및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 실적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4)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원칙,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5)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1명(부구청장)을 포함하여 총 9명 이내
 - 구성내용
 - 당연직 위원 2명 : 관광업무 소관국장 및 과장
 - 제25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광 분야 전문가 4명
- 6) 협약체결
 - 협약내용 :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위탁의 취소사항 등
 - 재 협 약 :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 결과 평가 후 수탁자 적정여부 판단
- 7) 지도·감독 : 수탁자의 보고의무 및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권 규정
- 8)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하고 일부 조문상의 표현을 변경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 1) 구청장이 관광 진흥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마포구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 2) 지원 대상을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 3) 지원내용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 4) 관광 진흥 설치 및 업무 범위와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마포구 지역 관광 진흥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광 진흥 설치에 관한 근거 마련하였으며
 - 5) 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합정동) 마포한강푸르지오 상가 1층에 설치하되,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6) 또한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업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위탁대상 :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위탁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 수탁자 선정기준
 - 센터 및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 실적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원칙,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1명(부구청장)을 포함하여 총 9명 이내였고
 - 구성내용
 - 가) 당연직 위원 2명 : 관광업무 소관국장 및 과장
 - 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 다)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광 분야 전문가 4명
- 7) 협약체결은
- 협약내용 :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위탁의 취소사항 등

- 재 협 약 :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 결과 평가 후 수탁자 적정여부 판단
- 8) 지도감독 : 수탁자의 보고의무 및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포괄적인 민간위탁 규정의 구체화를 통해 민간위탁 대상 선정 시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 효율성 도모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동 조례안은 현재 행정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행정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현재 마포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검토 중으로
- 1) 민간위탁 사업비가 마포구는 사업비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되어 있어 위탁사업의 범위(위탁사업을 1억 원 이상 또는 전체 위탁사업으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고
 - 2) 민간위탁 재계약 시에는 동일한 위탁업체에 대한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재계약 시 조금 더 신중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구의회 동의(강서구의회, 중구의회는 구의회 동의를 받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음
 - 3) 따라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개정내용을 보면 마포구 관광 진흥 센터 및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위탁 규정(안 제11조~ 안 제17조, 안 제22조)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관광산업활성화 조례 개정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위탁사업비 1억 원과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에 대한 검토 후 먼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되어 공포·시행 된 이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규

관광 진흥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9호, 2014.5.28, 일부개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